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내규

2021. 03. 01. 제정
<융합중개의과학 교육연구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함) 시행에 따른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BK21 사업의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BK21 사업 융합중개의과학 교육연구단에 적용한다.

제2장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

제3조(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① 교육연구단은 본 내규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_한국연구재단(BK21사업팀)」을 기초로 구체적인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혁신본부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 ·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내규는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의과학과에 소속 전일제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전일제대학원생이어야 한다. 전일제 대학원생이라 함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 학생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자격증 대여 형태의 변칙적 행위가 있는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동일대학 소속 4대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한다.
2. 교육연구단 참여교수가 지도교수인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
3.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혹은 연구지도를 신청하고 있는 수료 대학원생으로 입학 후 석사 2년 이내, 박사 4년 이내, 석·박사 통합 6년 이내를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동 기간에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①항에도 불구하고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 제 11조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① 다음과 같이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1. 직전 학기 평균평점(교내용)이 3.0 이상인 자

2.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참여대학원생 중 70% 이내로 선발하고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는다.

1. 휴학 중인 자
2. 수료 후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6조(참여대학원생 지원)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은 석사는 월 70만원 이상, 박사는 월 130만원 이상. 박사수료는 월 100만원 이상 석·박통합과정은 2년 이내는 월 70만원 이상, 2년 이후 재학학기는 월 130만원이상, 수료학기는 월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학기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한다.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제 8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②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는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원된다.

④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국제협력 경비, 우수논문 발표성과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참여대학원생의 의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수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BK21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일제 여부 검증 서류 및 연구실적 등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학위 논문 작성 시 반드시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대학원생 기타)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학기당 6학점 이내)를 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이 사업 중간에 휴학, 비전일제 및 제적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을 일할계산 정산하고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된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참여교수는 본교 대학원 의과학과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① 신규 선정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충원이 필요할 때 선정한다.

② BK21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본교 대학원 의과학과 교수 중에 영입한다.

③ 신임교원 선정은 참여교수 전년도 업적기준 상위 90% 이내일 경우 선정할 수 있다.

④ 참여교수 교체는 사유가 발생 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10조(참여교수의 평가)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은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1]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는 총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뤄지며 평가점수 하위 10%는 재심사 한다.

제11조(신진연구인력의 지원자격) ① 신진연구인력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자
2.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가.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나.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다.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12조(신진연구인력의 선발) ① 신진연구인력 신규 채용평가 기준은 [별표 2]에 의해 평가하고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채용 비율은 3분의 2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진연구인력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전일제로 연구에 종사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와 BK21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연구장소와 시설 및 연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제공받는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독자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교내외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 ⑥ 전항 이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의 위촉) ① 신진연구인력은 계약직으로 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계약교수로 1년 미만은 박사후과정생으로 위촉한다.
- ③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 중 소속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⑤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비전임교원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15조(신진연구인력의 재계약 기준 및 절차) 신진연구인력 재계약 평가기준은 최근 2년간의 연구업적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으로 하며 학술논문, 연구비, 학술발표 등의 연구업적에 합이 120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신진연구인력의 처우) ① 보수는 월 300만원 이상(퇴직금, 4대 보험 중 개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경비 및 우수논문발표 성과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7조(참여인력의 지원) [별표 3] 기준과 같이 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단기해외연수 지원범위) ①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제 학술대회만 지원한다.
2. 1인당 1년에 1회를 지원하며 참여교수를 포함하여 3인에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논문에 주저자(첫저자 또는 교신저자)에게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4. 단기방문연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수행능력 및 연수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15일이내로 지원한다.
5.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출장 전 [별표 4]을 받아 점검하고, 참석 후 부실학회로 의심되는 경우 [별표 5]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제19조(단기해외연수 지원금액) ① 국제학술회의 지원비는 항공료 및 체재비, 등록비를 지원한다.

1. 지원건수는 1인당 1년(사업단 회계연도 기준)에 1회(10일 이내)만 지원하며 본교 「여비 규정」을 준수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학원생 : 150만원 이내
나. 신진연구인력: 200만원 이내
2. 단기방문연수 지원비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며 1인당 1회(15일 이내) 150만원 이내로 한다.

제20조(단기해외연수 지원방법) ① 출장 전 반드시 사업단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항공료, 등록비 결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체재비는 개인계좌로 지원한다.

제21조(장기해외연수 지원범위) ① 다음 장기해외연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생 1인당 1회 지원 한다.
2. 연수기간은 15일 초과 3개월 이내로 한다.
3. 연수개시일은 연수계획서 상의 시작일로 한다. 이 사항은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 및 연수중단 또는 허용귀국일수 초과로 인한 연수비 반납에 적용된다.
4. 연수자가 연수기간 중 귀국허용일수는 10일 이내이며, 이는 일시 또는 조기 귀국일을 합산한 기간이다.
5. 일시 귀국할 경우 항공료 등 제반 경비는 연수자 본인이 부담한다.
6.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수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교육연구단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연수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연구단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연장기간은 연수기간 종료이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기간 연장에 따른 일체의 추가경비는 연수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연장기간만큼 장학금을 반납한다.
8. 연수중단 시 연수자는 지급된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장기해외연수 지원금액) ① 장기해외연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1. 공료(왕복) : 200만원 이내
2. 체재비 : 월 150만원 이내
단, 해당 연수기간동안 대학원생 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23조(장기해외연수 지원방법) ①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별표 6]를 참조하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발한다.

② 항공료 결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체재비는 개인계좌로 지원한다.

제24조(장기해외연수자 의무사항) ① 연수기간 내 연수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수 수행을 한다

② 연수기간 중 주소지 또는 긴급연락처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보고해야 한다.

③ 연수자는 임의로 연수를 중단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수중단 요청서 및 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연구단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수개시부터 연수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연수와 관련된 각종 변동사항을 보고한다.

⑤ 연수결과보고 등 각종 보고 및 연수성과정보를 제출한다.

⑥ 기타 연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25조(해외학자 초빙 지원범위) 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과학과 개설과목 수업을 위한 강의를 할 경우는 강의료 또는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연구단 주관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항공료, 체재비, 강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을 위한 공개 특강을 하는 경우 강의료 또는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한 외부자문위원 초청의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해외학자 초빙 지원금액) ① 강의료는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연수의무를 적용하여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 우수교수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관광비자가 아닌 교원비자(E-1) 혹은 단기취업비자(C-4)의 정식 절차를 통해 초청해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정식 절차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다.

③ 항공료는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하며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해외석학측에서 선결제후 지급하는 경우 항공료 지급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전신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체재비는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전신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7조(준용 및 시행세칙) ①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추가사항과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연구실적 환산기준표

※ 연구실적 산정기간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평가항목별 최고점을 만점으로 기준하여 평가

평가항목	구 분		배점기준	점 수	비고
연구논문 (30)	SCI(E)급 논문		1편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 일 때는 $1/m$)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n>0$) = $\{1 - m * \min(1/(m+0.5), 0.5)\} / n$	환산편수
			1편	보정 IF X 환산편수	환산보정 IF
			1편	보정 ES X 환산편수	환산보정 ES
연구과제 수혜 (10)	국책·산업체 연구과제		지분액	연구비 입금액 x 지분율*	
특허 (20)	특허등록	국제	1건	(1/특허 총 발명인 수) X 가중치**	
		국내	1건	(1/특허 총 발명인 수) X 가중치**	
기술이전 (10)	기술이전 수입액		지분액	수입액 x 지분율*	
국제화 (10)	국제활동		1건	국제학술대회발표 실적, 국제학술지활동, 위원회 활동, 국제저술 활동, 국제공동연구비 수주, 기타 국제공동연구, SCI국제공동연구	
사업단 기여도 (20)	사업단 기여도			사업단 운영 참여	

논문 :

- ▶ 논문 여부는 최신 JCR 기준을 따름
- ▶ 환산편수

<저널 논문편수 환산공식>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 일 때는 $1/m$)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총 저자 수 (= m + n)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n>0$) = $\{1 - m * \min(1/(m+0.5), 0.5)\} / n$ ▶ 예외조항 -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주저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		<저널 논문 환산 편수에 대한 예시>				
주저자수 (m)	기타저자수 (n)	주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min\{1/(m+0.5), 0.5\}$	기타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1-\text{주저자총점수})/n$	전체 저자 논문 환산 편수 합		
1	0	1	0	1		
1	1	1/2	1/2	1		
1	2	1/2	1/4	1		
1	3	1/2	1/6	1		
2	0	1/2	0	1		
2	1	2/5	1/5	1		
2	2	2/5	1/10	1		
2	3	2/5	1/15	1		
2	4	2/5	1/20	1		
3	0	1/3	0	1		
3	1	2/7	1/7	1		
3	2	2/7	1/14	1		

각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는 1/T로 한다.

▶ 기타(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함)

가.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나. 교신저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m=1의 경우로 간주함.

3	3	2/7	1/21	1
3	4	2/7	1/28	1
4	0	1/4	0	1
4	1	2/9	1/9	1
4	2	2/9	1/18	1
4	3	2/9	1/27	1

- ▶ “보정 IF”는 각 저널의 IF를 JCR category 별 상위 20% 저널의 IF 평균 수치로 나눈 값이며, 해당 저널이 여러개 category에 속해 있을 때 보정 IF 중 최대값 선택
- ▶ “환산보정 IF”에는 해당저널의 보정 IF값(F)에 환산편수(U)를 곱한 수치
- ▶ “보정 ES”는 각 저널의 ES를 JCR category 별 상위 20% 저널의 ES 평균 수치로 나눈 값이며, 해당 저널이 여러개 category에 속해 있을 때 보정 ES 중 최대값 선택
- ▶ “환산보정 ES”에는 해당저널의 보정 ES 값(Y)에 환산편수(U)를 곱한 수치

* 연구비 지분율 : 연구책임자는 $[1/(n+1)] \times 2$ 의 비율로, 공동연구자는 $[1/(n+1)]$ 의 비율로 산정(n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전체 연구자 수)할 수 있음. 이때 n을 계산할 때, 대학의 경우 교수(연구교수, 기금교수 포함) 수를 세고, 연구소와 회사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기관 당 1인으로 계산한다.

단,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은 2배로 계산한다.

** 특허 가중치 : 국제= 2, 국내= 1

[별표 2] 신진연구인력 선발 기준

1. 임용지원서 평가 : 80점

가.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20점)

- 1) 임용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한 경우에 한한다.
- 2) 연구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인정하며, 근무년수, 직책,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다.

나. 연구실적 (40점)

- 1) SCI(E)급 논문, 연구비, 특허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2) 임용지원서 최근 5년간 대표논문(2건이내)과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
- 3) 평가 기준 및 점수 (부분별 상대평가 점수 반영)
 - 가) 연구논문 : $(IF + \text{가산점} + 1\text{편}) \times \text{기여도}$
 - 가산점 : JCR 분야별 IF 값이 상위 5%(3), 10%(2), 20%(1)
 - 기여도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1), 공동저자일 경우 총저자수 2명(0.7), 3명(0.5), 4명~(0.3)
 - 나) 연구비 : 총 수주금액 / 1,000만원 $\times$ 0.2
 - 다) 특허 :
 - 1건당 특허등록 : 국제 (4), 국내 (2)
 - 1건당 특허출원 : 국제 (2), 국내 (1)
- 4)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는 최대 4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 면접 (20점)

- 1) 지원동기, 연구계획 발표, 인성을 반영하여 연구능력을 평가한다.

2. 지원예정 지도교수의 업적 평가 : 20점

※ 평가점수 총점의 60점 이하는 신규채용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참여인력 성과급 지급기준

예산항목	대상	지원기준	
대학원생 연구장학 금 및 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우수논문	논문 SCI(E)급 등재 논문으로 주저자(첫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주소가 고려대학교로 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며, 성과급 기여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지도교수 및 교육연 구단장의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 단, 성과급 기여도 평가 항목 중 각 7개 항목 이상 해당자에 한하며,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정보별 월 단 위 연구장학금 지급기준 이하로 지급하고 신진연구인력 은 월급여 이하로 지급한다.
			지원받을 조건이 성립되면 교육연구단에 보고하고 논문 발간일(게제 수락일 기준)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집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교수를 통해 교육연구단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급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논 문발간일 집행기준일은 사업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 다.
		우수포스터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움에 포스터를 제출 하여 우수 포스터를 발표한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에 게 성과급을 차등지원 한다.
교육연구 단운영비	• 참여교수	연구업적 및 사업단 기여도 : [별표 1]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행정직원	성과급 기여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교육연구단장의 평가를 통해 지 원한다. 단, 성과급 기여도 평가항목 중 각 7개 항목 이상 해당자에 한하여, 월 급여 기준 이하로 지급한다.	

[별표 4]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허위 학술단체 리스트에 등록되어있지 않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에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

융합중개의과학 교육연구단장 귀하

[별표 5] 부실학회 의심 체크리스트 양식

부실학회 의심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O/X/ △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4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5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6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7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 위의 점검사항 및 “(의심 사유 내용 기재)”와 같은 사유로 부실학회가 의심되어 신고하오니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의 면책 또는 감경을 요청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

융합중개의과학 교육연구단장 귀하

[별표 6] 장기해외연수자 선발 평가 기준

심사 항목	심 사 기 준	주요 심사 착안 사항
연수수행 능력 및 연수 계획서의 우수성 (50%)	신청자의 과거 수상 실적, 논문·학회 발표 실적, 학과 성적, 어학능력 등 연수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전공 관련 주요 논문 발표 및 학회 발표 실적 등의 우수성 - 인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지 언어구사능력(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학부 및 대학원 성적의 우수성 - 과거 경력 및 수상 실적의 우수성
연수계획 및 기관의 우수성 (30%)	연수 계획의 수월성 평가 및 연수기관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연구실적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정도는?	- 연수계획서의 우수성 - 연수의 필요성 - 연수기관과의 교류실적 - 연수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수준 - 연수기관의 연구수준 및 연구인프라 구축정도
연수의 기대효과 (20%)	주요 관심 분야 및 연수계획 등에 따라 연수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가?	- 주요 관심분야와 지원분야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인턴십 기간 중 연구희망 주제와의 적합성 - 인턴십 활동 후 학생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 향상 정도